

예산총칙

제1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4,039,753,650	121,192,610
일	반 회 계	3,273,187,788	98,195,634
특	별 회 계	766,565,862	22,996,976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231,874,208	6,956,226
①	상 수 도 사 업	124,021,604	3,720,648
②	하 수 도 사 업	107,852,604	3,235,578
	기 타 특 별 회 계	534,691,654	16,040,750
①	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228,597,810	6,857,934
②	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6,952,781	208,583
③	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	7,161,989	214,860
④	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64,111,488	1,923,345
⑤	택 지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1,440,815	43,224
⑥	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2,012,658	60,380
⑦	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16,958,523	508,756
⑧	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	4,840,000	145,200
⑨	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	16,941,925	508,258
⑩	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특 별 회 계	36,007,635	1,080,229
⑪	도 시 철 도 사 업 특 별 회 계	18,515,351	555,461
⑫	소 방 사 업 특 별 회 계	131,150,679	3,934,52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